

예산총칙

2020년도 추가경정 제3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00,865,449	78,025,963
일반회계	2,073,768,006	62,213,040
특별회계	527,097,443	15,812,923
공기업특별회계	309,795,260	9,293,858
상수도사업	89,398,741	2,681,962
하수도사업	220,396,519	6,611,896
기타특별회계	217,302,183	6,519,065
공유재산관리	45,024,803	1,350,744
의료급여기금	8,950,701	268,52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2,272,977	68,18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711,441	21,343
교통사업	73,113,693	2,193,411
철도건설사업	11,081,945	332,458
폐기물처리시설	5,590,850	167,726
도시재정비촉진	1,316,760	39,503
도시개발	27,016,455	810,494
공공시설등 설치	4,000,156	120,005
문화시설건립	9,508,369	285,251
도시재생	28,714,033	861,42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20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054,170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16,272,186천원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7,734,984천원

(3) 내부유보금 47,000천원

제 7 조 2020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98,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